

보도시점 2024. 2. 29.(목) 06:00
2. 29.(목) 석간

배포 2024. 2. 28.(수) 16:00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 2월 29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와 함께 지역별로 위기경보 차등화
- 산발적 발생 대비 예찰·검사·점검 등 주요 방역조치는 3월 말까지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감소, 겨울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24.2월 개체 수는 전월 대비 6.2% 감소, 1월 99만 → 2월 92.9만수) 등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옥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H5N6) 25건, (H5N1) 5건, (H5N1/H5N6 Mixed) 1건

**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실험 결과 20%) 의심축 조기 발견이 어려움

*** 살처분 규모(360만여수)는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24.2.27. 기준)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 (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 방역대책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 (기존) 500m 내 전 축종 +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발생 시 1km까지 오리 살처분 → (변경) 500m 내 전 축종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대책 주요 내용
 2. 농장 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주요 차단방역조치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용상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과 장	이현준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임호균 (044-201-7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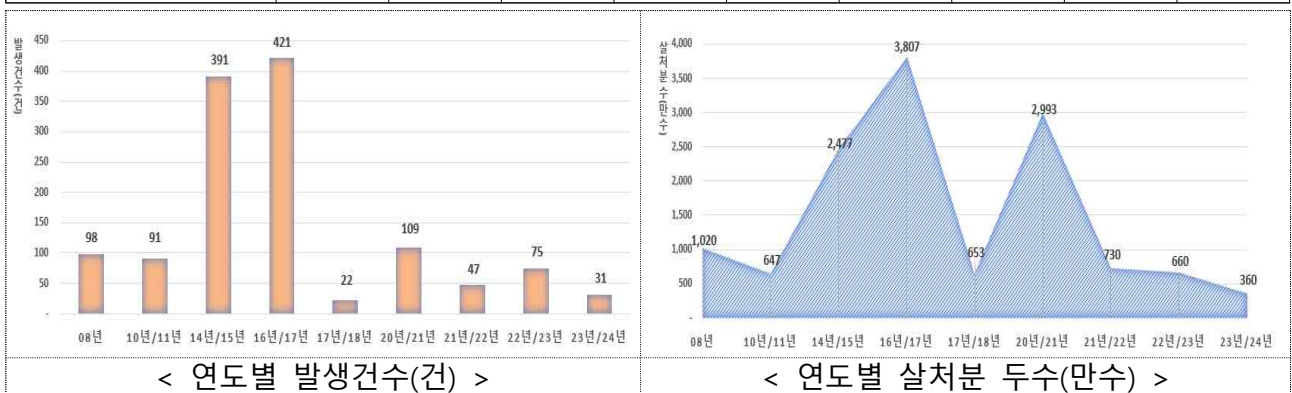


□ '23/'24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 (가금농장) 31건* 발생하여 360여만 수 살처분('24.2.8일 충남 아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 마지막 발생)
- * (축종별) 닭 17건(산란계 15, 종계 2), 오리 14건(육용오리 12, 종오리 2)
- 2008년 이후 가금 살처분은 최소 규모(360여만 수, 최근 15년간 고병원성 AI 발생 중 가장 적은 수치)

(단위 : 건, 만수)

구분	'08년	'10/'11	'14/'15	'16/'17	'17/'18	'20/'21	'21/'22	'22/'23	'23/'24
발생건수(건)	98	91	391	421	22	109	47	75	31
살처분 두수(만수)	1,020	647	2,477	3,807	653	2,993	730	660	360



- (야생조류) '23.11.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고병원성 AI 첫 검출 후 총 19건 검출('24.2.6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마지막 검출)

□ 상황진단

- 가금농장 발생 및 야생조류 항원 검출 감소,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위험도는 감소
 - 다만,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어 취약축종·위험지역 위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
-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 방역 대책

- (위기 경보) 지역별로 위기 단계를 구분하여 유지·발령
 - 발생지역*(경기·충남·전남·경북, 2.28일 기준)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 그 외 지역은 하향 조정(심각 → 주의)
 - * 가금농장 발생에 따른 설정된 방역지역이 미해제된 시·도 또는 신규 발생 시·도
- (살처분 범위)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조정 추진(3.1.~)
 - * (기존) 500m 내 전 축종 + 전남·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발생 시 1km까지 오리 살처분 → (변경) 500m 내 전 축종
- (예찰·검사) 3월까지 '심각' 단계에 준한 AI 검사체계 지속 운영
 - (산란계) 3월 한 달간 2회 정밀검사, 특별관리지역(18개 시·군) 및 고위험 하천(10개소) 인근 농장 검사 강화조치는 3.31일까지 유지
 - * 10만수 이상은 매일 전화예찰, 10만수 이하는 주 1회 예찰 유지
 - (일제검사)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3.18.~3.26. 예정)
- (명령·공고)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3.31일까지 연장(~3.31.)
- (입식·출하)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 기간 지속 단축·운영*, '심각' 단계 발령 시·도는 '14일 이상 입식제한 기간' 지속 적용
 - * 육계 5일, 육용오리 1일(단,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 동별 3일 이내 가능)
- (사육제한) 오리농장 사육제한 명령('23.11.~'24.2월) 종료
- (방역 점검) 산란계·오리·토종닭(1,057호) 및 신규 입식농장 점검 강화
 - (산란계) 10만수 이하 산란계 농장을 점검하고,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은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외부인 출입·분뇨 반출 최소화
 -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출입, 분뇨 반출 관련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확인
 - (그 외 축종) 전국 오리 농장 및 토종닭 농장에 대한 점검
 - (입식 점검) 방역지역 해제, 사육제한 종료로 신규 입식하는 오리 농장 등은 환경검사 및 2단계 점검(시·도 및 시·군 합동 → 검역본부)
- (소독) '일제 집중 소독기간' 및 '일제 휴업·소독의 날' 매주 운영

참고

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 비교

구분	발생 시	3월 이후(조정)
위기 단계	· 전국 '심각' 단계	· 전국 '주의' 단계(발생 시·도는 '심각')
중수분·상황실	· 중수분 및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현행 유지
정밀검사	· '심각' 단계 정밀검사 체계 운영 - 정기 정밀검사(PCR) 주기 단축 및 전(全) 축종 출하전 검사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심각' 단계 정밀검사 체계 유지(~3.15.) → '주의' 단계 검사체계로 조정(3.16.~) ·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 (3.18.~3.26. 예정) ·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8개 시·군) 내 철새 도래지 및 고위험 하천(10개) 3km 내 산란계 검사 강화(시료채취 확대) 유지 · 토종닭 출하농가 도축장 검사 강화 유지 * (현행) 출하농가 10% → (강화) 30%
행정명령·공고	· 행정명령(11건) 및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8건) 시행(~2.29.)	·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3.31.)
입식·출하 관리	· 일제 입식·출하기간 단축 * (육계) 5일 내, (육용오리) 당일 출하(당일 출하가 어려울 경우 3일 이내 동별 출하) · 육계·육용오리 입식 제한기간 14일	· 현행 유지 · 발생 시·도는 현행 유지, 비발생(시·도 내 모든 방역대 해제) 시·도는 미적용
오리 사육제한	· '23.11월~'24.2월 시행	· 우리 부 사업 종료 * 지자체는 자체 사업 연장 시, 위험도 평가 후 우리 부와 협의·시행
소독	·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인근 도로, 밀집단지 및 대규모 농장 등 매일 소독 ·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검사 실시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점검	· 대규모(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위주 점검 · 오리농장 입식 전 환경검사 및 점검 · 발생농장 3단계* 입식 전 점검 * (1단계) 계열사 → (2단계) 시도 + 시·군 → (3단계) 검역본부	· 산란계 농장(10만수 이하 + 미흡 농장), 오리·토종닭 농장 점검(1,057호, 3월) · 현행 유지(전국 방역대 해제 시까지) · 발생농장 3단계 점검 현행 유지 · 방역대 해제, 사육제한 종료 등으로 오리 입식 시 2단계 점검 * 시·도 + 시·군 합동 → 검역본부
초소 운영	· 산란계 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 그 외 축종	· 현행 유지 · 지자체가 위험도를 판단(시·도, 시·군간 협의)하여 고위험 농장만 유지
전통시장 및 계류장 관리	·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주 1회) · 산 가금 유통금지 관련 행정명령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계열사·협회	· 계열·소속 농장 방역 지도·점검·홍보	· 현행 유지

- (출입 통제) 농장 내 출입차량 및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 * 가축·사료·분뇨·퇴비·깔집 운반차량 외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내 진입 금지

- (청소·소독)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청소·소독
 - * 야생조수류를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을 매일 청소·제거

- (축사 출입) ① 전실을 오염·청결구역으로 구분·관리, ②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③ 축사 전용 작업복 (방역복) 착용, ④ 발판소독조를 사용하여 소독

- (장비·물품) ① 팔레트·난좌·합판 등 외부 방치를 금지하고, 축사 반입 전 반드시 세척·소독, ② 사용 전·후 왕겨살포기 또는 로터리기 등을 충분히 세척·소독

- (야생동물) ①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또는 덮개, 차단시설) 설치, ② 나무 가지치기

- (폐쇄 조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 조치(시건장치 포함)